

# KOREA DISASTER RELIEF

전국재해구호협회 / 2007연보



발행인 : 최학래  
발행일 : 2007년 4월 30일  
발행처 : 전국재해구호협회(02\_3272\_0123)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www.relief.or.kr](http://www.relief.or.kr)

인 쇄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586-1번지(주식회사 그린 프린트)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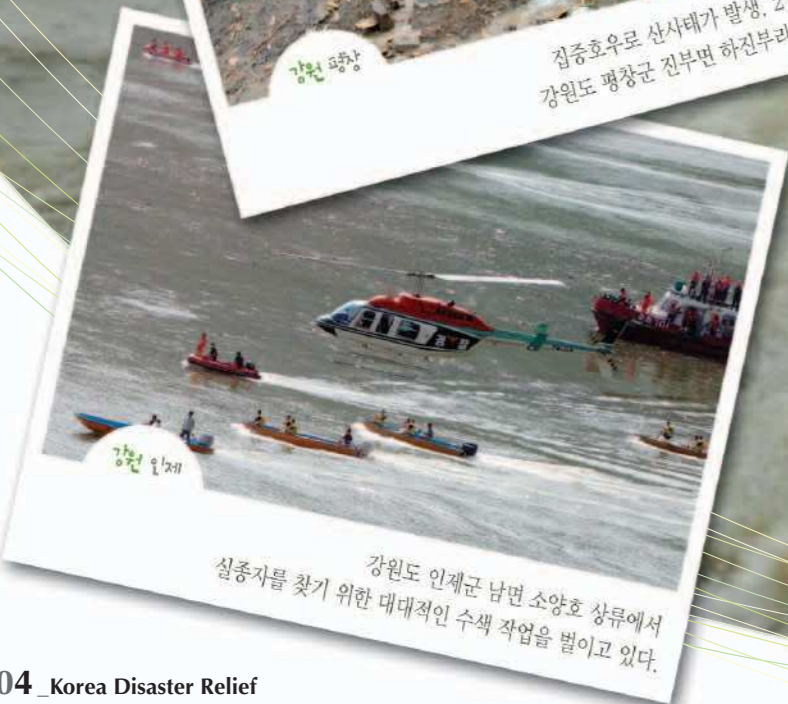
되돌아보는 2006년 재해현장	04
2006년 주요 재해	10
2006년 구호 활동	12
2006년 자원봉사	18
통계로 본 재해 및 구호	22
2007년 구호 계획	26
2007년 구호 체계	30
협회 이모저모	32
부록	35
협회 소개	
성금과 구호품을 기탁하려면	
재해구호물품세트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참가하려면	
개정 재해구호법	

되돌아보는 2006 재해현장 **호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2명이 숨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피해가옥.

강원 평창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원 인제



중장비를 동원해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에서 집중호우로 유입된 각종 생활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다.

강원 인제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자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유실됐던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 3리의 도로가 급류에 다시 끊어져 한계령 방면의 차량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 태풍

되돌아보는 2006 재해현장



태풍 '에위니아'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에 한 주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붕괴됐다. 이 집은 인근 하천 제방이 터지면서 쏟아져 나온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



경남 진주

태풍 '에위니아'로 하천 제방이 터지면서 꽤리로 변한 경남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 한 비닐하우스.



경남 산청

태풍 '에위니아'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에서 한 주민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땅바닥에서 눈물을 쏟아 부구에 나선 주민들이 달래고 있다.



전남 보성

태풍 '에위니아'가 남부지방을 강타한 가운데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물에 잠긴 가옥.

되돌아보는 2006 재해현장 **호우**



집중호우로 가옥이 완전히 잠긴 초평면 오갑리 석탄마을 주민을 보트로 구조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 3리의 한 가옥이 수해 당시의 처참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영동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양양읍내가 물에 잠기자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 동안 쏟아진 폭우로 침수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피해 가옥.

# 2006년 주요 재해

2006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연이은 집중호우로 우리나라 전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 중에서 강원도의 피해가 가장 컸다. 강원도는 14일~16일 동안 내린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사망과 실종자가 속출했고, 평창과 인제 등 일부 마을은 전체가 사라지거나 고립됐다. 2006년에는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이재민 1,123세대가 발생했고, 7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1조 9천여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산피해도 컸다. 특히 강원도는 전체 피해 규모의 72%인 1조3천7백여억 원에 이를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2006년도 재해 현황

구 분	이재민 (세대)	사망/실종 (명)	부상 (명)	주택전파 (세대)	주택반파 (세대)	주택침수 (세대)	생계지원 (세대)
7월 태풍 및 호우	1,087	70	4	548	620	7,088	6,919
10월 강풍 및 호우	36	2	1	1	37	422	2,027
계	1,123	72	5	549	657	7,510	8,946

※ 생계지원세대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에서 50% 이상 재산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세대와, 사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제조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사업자)을 말함.

###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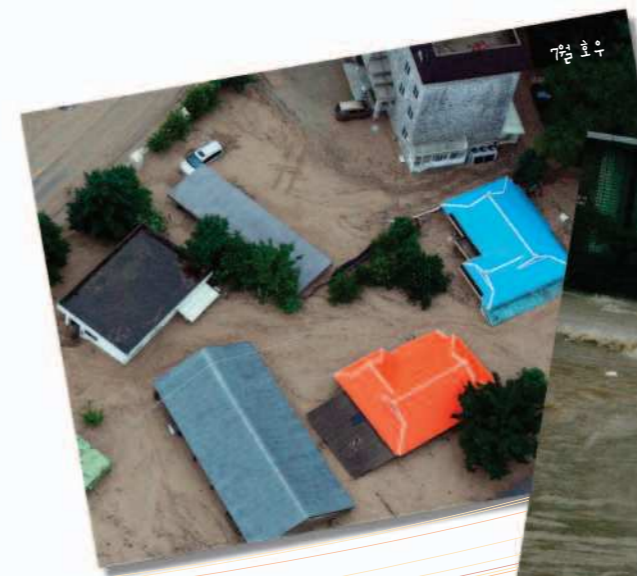
2006년 7월 7일부터 29일까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연이어 생긴 장마전선으로 강원도 홍천 1,208mm, 서울 990mm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1조 8,34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와 7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기간 : 2006년 7월 9일 ~ 29일
- 피해지역 : 총 16개 시·도, 213개 시·군·구
- 인명피해 : 70명
- 의연금 지원대상 : 14,824세대
- 재산피해 : 1조 8,344억 원

### 10월 강풍 및 호우

2006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영동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최고 강릉 317.5mm)와 강풍, 풍랑 등으로 2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주택 460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도로 23개소를 비롯해 어선 130척이 피해를 입었다.

- 기간 : 2006년 10월 22일 ~ 24일
- 피해지역 : 총 6개 시·도, 25개 시·군·구
- 인명피해 : 2명
- 의연금 지원대상 : 2,487세대
- 재산피해 : 698억 원



▲ 헬기를 타고 내려다 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주택들이 완전히 토사에 파묻혀 있다.



▲ 강원도 강릉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강릉시내가 물에 잠기자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 2006년 구호 활동

## 2006년도 모집·지원 요약

구 분	모 집		지 원		
	의연금 (백만원)	의연품 (구호세트)	의연금 (백만원)	의연품 (구호세트)	자원봉사
계	79,246	708,199 (80,000)	48,790	875,981 (79,605)	495명
7월 태풍 에위니아·호우 기간 : 7.9~7.29	79,246	707,639	46,224	785,175	395명
10월 호우·강풍 기간 : 10.22~10.24	-	-	2,566	8,132	-
기 타	•재해구호물품세트 80,000 세트 제작 •05년 폭설피해 접수 560점 (~06년 2월)		•재해구호물품세트 79,605세트 지원 및 위탁계약 (서울 12,419, 경기 29,000, 강원 12,028, 기타 26,158) •05년 폭설피해 2,616점 지원 (~06년 2월) •사회복지시설에 80,058점 지원		100명 (05년 폭설피해로 06년 1~3월까지 자원봉사자 100명 참여)

## 2006년도 재해의연금 모금

- 총모금액 : 79,246,151,059원 (ARS 모금액 2,762,899,514원 포함)
- 총지원액 : 48,790,440,000원
- 모집경비 등 : 1,788,762,90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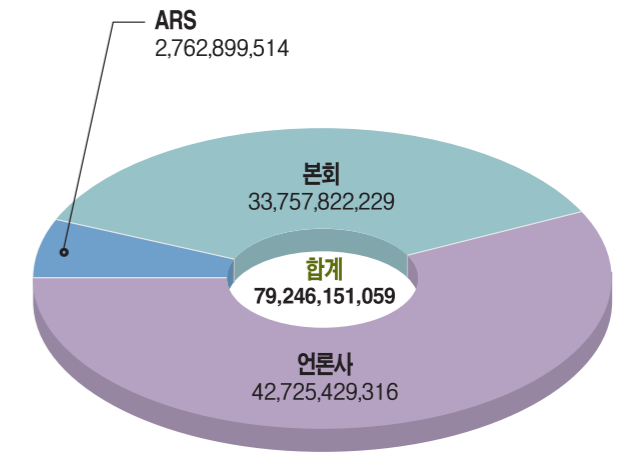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 ▶중소규모의 재해로 모금을 할 수 없을 때 ▶대규모 재해시 긴급구호를 위한 선지원이 필요할 때 ▶긴급지원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합니다.

### 모집처별 의연금 모금

(단위:원)

구 분	모 금 액	비 율(%)
언론사	42,725,429,316	53.91%
본 회	33,757,822,229	42.60%
ARS	2,762,899,514	3.49%
합 계	79,246,151,059	100%



### 재해별 의연금 모금

(단위:원)

재 해	모 금 액	비 율(%)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79,246,151,059	100%
10월 강풍 및 호우	-	-
합 계	79,246,151,05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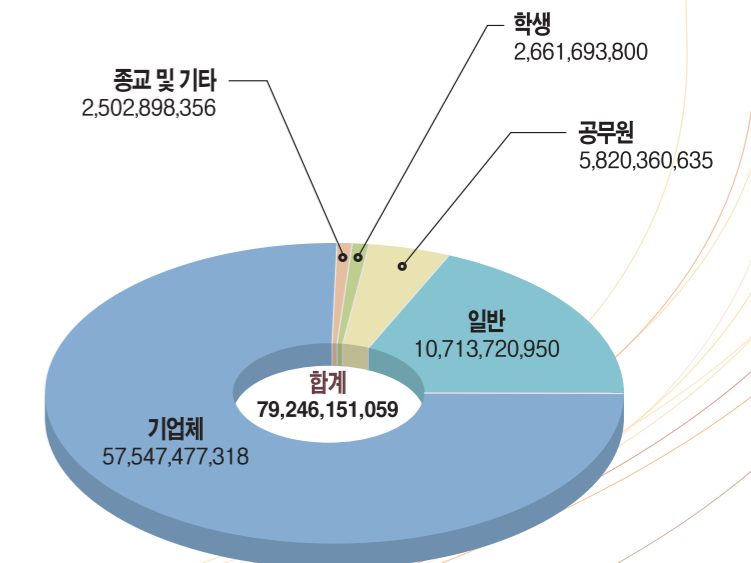
※10월 강풍 및 호우 피해 때는 의연금품을 모집하지 않았음.

### 기탁자별 의연금 모금

(단위:원)

구 분	모 금 액	비 율(%)
일 반	10,713,720,950	13.52%
기업체	57,547,477,318	72.62%
공무원	5,820,360,635	7.34%
학 생	2,661,693,800	3.36%
종교단체	2,500,547,715	3.16%
기 타	2,350,641	0.00%
합 계	79,246,151,059	100%

※ARS 1,381,450 건은 일반에 포함.



## 2006년도 재해의연금 지원

### 재해별 재해의연금 지원

(단위:원)

구 분	지원일자	지원금액	내 용
7월 호우 및 태풍 피해	7월 24일	6,805,500,000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의연금 선지원
	7월 26일	2,607,000,000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의연금 선지원(2차)
	8월 8일	1,073,000,000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의연금 선지원(3차)
	8월 22일	7,648,500,000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의연금 지원(4차)
	8월 31일	365,500,000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의연금 지원(5차)
	8월 31일	27,000,000,000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의연금 추가지원
	9월 25일	625,610,000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월동비 지원
	9월 26일	97,000,000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컨테이너 주민 등 명절상품권 지급
	9월 28일	1,830,000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월동비 지원(전북 누락분)
	소 계	46,223,940,000	
10월 강풍 및 호우 피해	10월 26일	418,000,000	10.22~10.24 호우 및 강풍피해 선지원(강원도)
	11월 1일	1,913,000,000	10.22~10.24 호우 및 강풍피해 선지원(강원도)(2차)
	11월 17일	235,500,000	10.22~10.24 호우 및 강풍피해 지원(3차)
	소 계	2,566,500,000	
<b>합 계</b>		<b>48,790,440,000</b>	

※ 모집경비 등 1,788,762,902원 별도



### 시도별 재해의연금 지원

(단위:천원)

구 분	계	인명피해		주택피해			생계지원		추가 지원	상품권 및 월동비 지원
		사망,실종	부상	전파	반파	침수	농어업인	소상공인		
서울	1,846,500	35,000	-	20,000	26,250	474,000	58,000	395,000	837,000	1,250
부산	968,000	5,000	-	10,000	33,750	398,000	23,000	55,000	443,000	250
대구	257,250	-	-	-	6,250	41,000	71,000	19,000	120,000	-
인천	539,000	-	-	5,000	15,000	170,000	17,000	77,000	255,000	-
광주	7,250	-	-	-	6,250	1,000	-	-	-	-
대전	5,000	-	-	-	5,000	-	-	-	-	-
울산	273,750	10,000	-	15,000	2,500	45,000	25,000	-	176,000	250
경기	6,569,310	85,000	7,500	57,500	31,250	2,298,000	691,000	243,000	3,139,000	17,060
강원	24,543,540	375,000	-	2,040,000	951,250	2,170,000	2,239,000	1,388,000	14,712,000	668,290
충북	1,807,010	30,000	-	77,500	75,000	343,000	76,000	67,000	1,105,000	33,510
충남	458,000	-	-	15,000	50,000	106,000	1,000	-	286,000	-
전북	274,830	10,000	-	35,000	41,250	46,000	3,000	1,000	136,000	2,580
전남	1,653,500	-	5,000	72,500	85,000	221,000	176,000	65,000	1,029,000	-
경북	1,379,000	30,000	5,000	50,000	136,250	255,000	269,000	-	633,000	750
경남	5,318,500	-	5,000	60,000	67,500	912,000	1,301,000	230,000	2,743,000	-
제주	2,890,000	15,000	-	-	2,500	30,000	1,456,000	-	1,386,000	500
<b>합 계</b>	<b>48,790,440</b>	<b>595,000</b>	<b>22,500</b>	<b>2,457,500</b>	<b>1,535,000</b>	<b>7,510,000</b>	<b>6,406,000</b>	<b>2,540,000</b>	<b>27,000,000</b>	<b>724,440</b>





# 2006년도 재해의연품 지원

## 품목별 의연품 모집·지원

구 분	접수현황						지 원	잔 고
	이월분	위탁이월	제작분	접수분	전 환	소 계		
응급구호세트	10,478	925			△ 11,403	-	-	-
일시구호세트	△ 107	4,006	40,000			43,899	30,393	13,506
응급구호기본	4,266	2,461	10,000		11,403	28,130	19,300	8,830
응급구호남자	6,747	1,666	10,000		11,403	29,816	19,696	10,120
응급구호여자	6,729	1,650	10,000		11,403	29,782	19,650	10,132
재가구호세트	16,433	2,793	10,000			29,226	15,322	13,904
<b>계</b>	<b>44,546</b>	<b>13,501</b>	<b>80,000</b>	<b>-</b>	<b>22,806</b>	<b>160,853</b>	<b>104,361</b>	<b>56,492</b>
의 류(점)	161,058			50,906		211,964	182,472	29,492
침구류(매)	100			21,198		21,298	8,258	13,040
버 너(대)	659			1,002		1,661	1	1,660
생필품(점)	104,298			141,339	△ 10,000	235,637	201,004	34,633
신발류(족)	6,639			10,430		17,069	6,279	10,790
세제류(점)	4			2,203		2,207	810	1,397
의약품(점)	-			42,608		42,608	42,608	-
학용품(점)	-			252		252	-	252
식품류(점)	-			356,598		356,598	356,598	-
생수(박스)	3,500			18,560	4,716	26,776	18,578	8,198
라면(박스)	-			8,568		8,568	8,568	-
식기류(점)	3,625			3,374		6,999	3,720	3,279
백 미(Kg)	-			30,400		30,400	30,400	-
기 타(점)	1,053			20,761	△ 500	21,314	16,685	4,629
<b>계</b>	<b>280,936</b>	<b>-</b>	<b>-</b>	<b>708,199</b>	<b>- 5,784</b>	<b>983,351</b>	<b>875,981</b>	<b>107,370</b>

## 시도별 의연품 모집·지원

구 분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기타	위탁 보관	계
일시구호세트	1,800	390		-	500	300	4,220	-	1,820	1,041	1,000	1,177	710	1,135	210		16,090	30,393
응급구호기본	35	140		100	5	-	3,406	4,961	855	1,547	359	703	826	434	150		5,779	19,300
응급구호남자	35	140		100	5	-	3,406	6,169	855	1,433	284	716	825	434	150		5,144	19,696
응급구호여자	35	140		100	5	-	3,406	6,166	855	1,433	237	692	825	434	150		5,172	19,650
재가구호세트	-	-		-	7	-	3,406	3,112	807	940	230	442	505	223	103		5,547	15,322
<b>계</b>	<b>1,905</b>	<b>810</b>		<b>300</b>	<b>522</b>	<b>300</b>	<b>17,844</b>	<b>20,408</b>	<b>5,192</b>	<b>6,394</b>	<b>2,110</b>	<b>3,730</b>	<b>3,691</b>	<b>2,660</b>	<b>763</b>		<b>- 37,732</b>	<b>104,361</b>
의 류(점)	-		36				28	102,664	-	1,026	882	1,784	6	12	76,034			182,472
침구류(매)	-		-				604	7,222	220	-	-	212	-	-	-			8,258
버 너(대)	-		-				-	-	-	-	-	-	-	-	-	1		1
생필품(점)	-		-				1,000	197,964	550	-	-	1,800	-	-	40			201,004
신발류(족)	-		12				-	4,866	220	342	294	-	2	4	539			6,279
세제류(점)	140		-				-	650	-	-	-	-	-	-	-	20		810
의약품(점)	-		-				-	42,608	-	-	-	-	-	-	-			42,608
학용품(점)	-		-				-	-	-	-	-	-	-	-	-			-
식품류(점)	-		-				7,800	323,778	-	-	-	25,020	-	-	-			356,598
생수(박스)	-		-				100	13,636	-	-	-	1,842	-	-	3,000			18,578
라면(박스)	35		-				300	7,833	-	-	-	400	-	-	-			8,568
식기류(점)	-		-				-	1,965	660	-	-	1,000	-	-	95			3,720
백 미(Kg)	-		-				-	30,400	-	-	-	-	-	-	-			30,400
기 타(점)	-		-				-	16,356	-	-	-	-	-	-	329			16,685
<b>계</b>	<b>175</b>	<b>48</b>					<b>9,832</b>	<b>749,592</b>	<b>1,650</b>	<b>1,368</b>	<b>1,176</b>	<b>32,058</b>	<b>8</b>	<b>16</b>	<b>80,058</b>			<b>- 875,981</b>



# 2006년 자원봉사

## 2006년도 자원봉사 활동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는 태풍, 홍수, 폭설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을 복구하고 피해 지역 주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봉사단을 운영함으로써 재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해별 자원봉사 활동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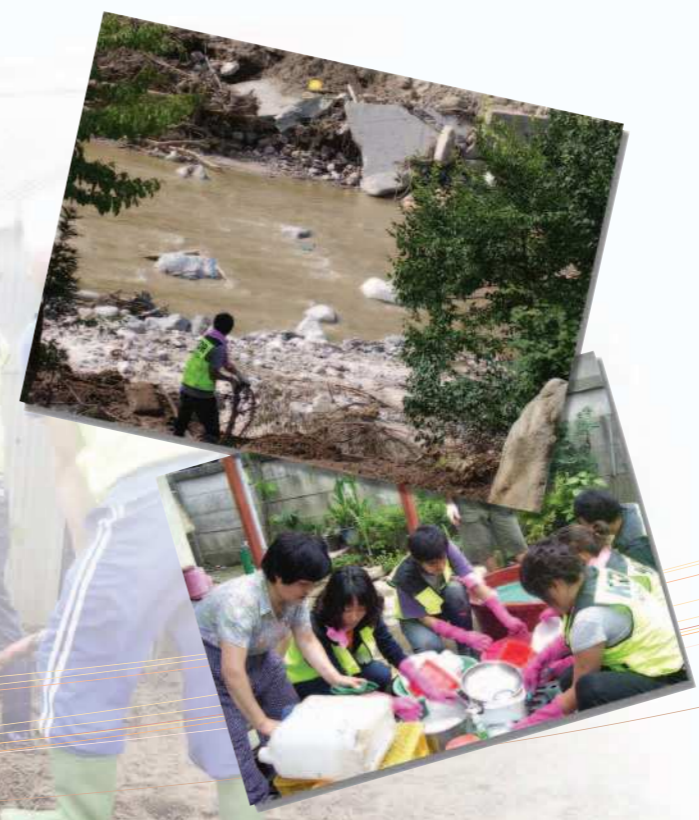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총 12회에 걸쳐 전라북도 폭설 피해지역과 강원도 호우 피해지역에서 495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비닐하우스 철거, 토사제거, 농경지정리, 주택도배 등의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 폭설 피해지역 봉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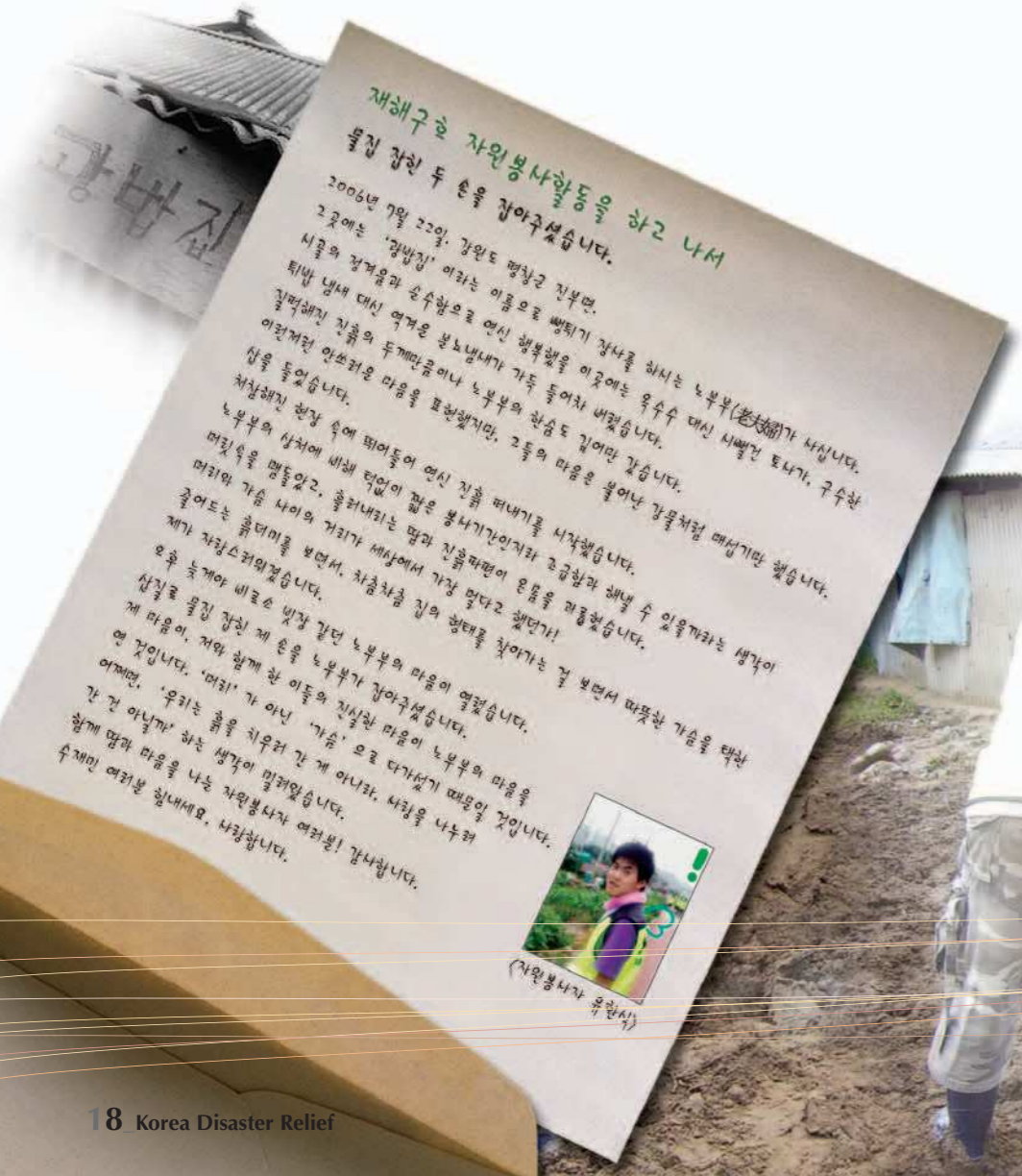


- | 1차 |**
  - 일시: 2006년 1월 1일
  - 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일대
  - 인원: 자원봉사자 30명
  - 내용: 비닐하우스 청소 및 오리농장 정리, 제설 작업
- | 2차 |**
  - 일시: 2006년 2월 26일
  - 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일대
  - 인원: 자원봉사자 40명
  - 내용: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및 농경지 복구 작업
- | 3차 |**
  - 일시: 2006년 3월 25일
  - 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일대
  - 인원: 자원봉사자 30명
  - 내용: 비닐하우스 철거 및 농경지 복구 작업 정리 및 하수로 정리

### 7월 집중호우지역 봉사 활동



- | 1차 |**
  - 일시: 2006년 7월 22일
  - 지역: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 5리
  - 인원: 자원봉사자 130명
  - 내용: 산사태지역 토사제거, 침수농장 장비세척 등
- | 2차 |**
  - 일시: 2006년 7월 23일
  - 지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 인원: 자원봉사자 90명
  - 내용: 피해지역 토사제거 및 침수가옥 하수로 정리
- | 3차 |**
  - 일시: 2006년 7월 29일
  - 지역: 강원도 오색약수터 일대
  - 인원: 자원봉사자 100명
  - 내용: 피해지역 토사제거, 침수된 집기도구 정리 및 하수로 정리
- | 4차 |**
  - 일시: 2006년 7월 31일
  - 지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일대
  - 인원: 자원봉사자 50명
  - 내용: 가옥의 토사제거 및 침수된 농경지 정리
- | 5차 |**
  - 일시: 2006년 8월 10일
  - 지역: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 인원: 자원봉사자 40명
  - 내용: 피해주택 도배봉사



11~12월 동절기 구호 활동

| 1차 |

- 일시: 2006년 11월 22일
- 지역: 강원도 인제군 일대
- 대상: 컨테이너 거주 이재민 170세대
- 내용: 의류 1,360점 지원

| 2차 |

- 일시: 2006년 11월 23일
- 지역: 강원도 평창군 일대
- 대상: 컨테이너 거주 이재민 92세대
- 내용: 의류 96점 지원

| 3차 |

- 일시: 2006년 12월 4일
- 지역: 강원도 강릉시 일대
- 대상: 7월 집중호우 및 10월 강풍피해 이재민 50세대
- 내용: 의류 480점 및 김치 500포기 지원

| 4차 |

- 일시: 2006년 12월 5일
- 지역: 강원도 평창군 일대
- 대상: 컨테이너 거주 이재민 50세대
- 내용: 김치 365포기 지원



2006년도 세탁구호 활동

세탁구호는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의 오염된 옷과 이불 등을 이동식 세탁차량을 통해 세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탁구호 실적

- 2006년도에는 총 9,720kg 분량을 세탁하였습니다.
-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군과 인제군 일대 87세대의 의류와 이불 등을 세탁하였습니다.
- 비재해기간 동안에는 경기도 안양평화보육원과 천안 죽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세탁구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일 자	장 소	세탁실적		작 업 내 용
		세대수	세탁량(kg)	
7월 21일~22일	강원 평창군 용평면	16	1,440	이재민 대상 세탁 지원
7월 23일~24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26	2,340	이재민 대상 세탁 지원
7월 25일~26일	강원 인제군 북면	45	4,050	이재민 대상 세탁 지원
11월 16일~18일	경기 안양평화보육원		1,350	보육시설 겨울이불 세탁
12월 2일	충남 천안 죽전원		540	장애자 수용시설 이불 세탁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교육

2006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 총 1,540명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자원봉사 리더 교육, 재해구호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명	날 짜	교육대상	인 원
재해구호 자원봉사 리더 교육	9월21~22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자원봉사협의회(센터)장 등	120명
재해구호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10월~12월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기관 담당자	300명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교육	4월~12월	재해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	1,120명

- ※ 재해구호 자원봉사 리더 : 재해 현장에서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봉사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로, 현장 경험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 ※ 재해구호 자원봉사 관리자 : 자원봉사자들이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사전 교육과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



# 통계로 본 재해 및 구호

##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규모

### 원인별 자연재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태풍		10,463	274,871	85,348	146,249		5,185,728	4,233,391	341,561		10,277,614
호우	442,259	128,783	1,264,168	70,241	247,152	459,731	929,564	174,849	214,977	351,866	4,283,594
대설	1,089								673,897	549,992	1,224,979
폭풍	3,825		4,880								8,705
호우·태풍				1,049,048	252,049						1,385,097
폭풍설	35,577	20,959	32,906	15,042		796,436					900,921
기타	298	30,708	5,983							9,476	46,466
<b>합계</b>	<b>483,050</b>	<b>190,914</b>	<b>1,582,810</b>	<b>1,219,681</b>	<b>645,451</b>	<b>1,256,167</b>	<b>6,115,292</b>	<b>4,408,240</b>	<b>1,230,435</b>	<b>1,049,839</b>	<b>18,181,884</b>

※ 자료 : 소방방재청

### 대상별 자연재해 규모

구분	이재민 (인)	사망 (인)	침수면적 (정보)	건물 (백만원)	선박 (백만원)	농경지 (백만원)	공공시설 (백만원)	기타 (백만원)	합계 (백만원)
1996년	18,686	77	47,968	14,968	854	54,086	334,512	78,628	483,050
1997년	6,296	38	45,774	1,879	2,792	11,109	146,312	28,821	190,914
1998년	30,308	384	91,629	38,618	1,316	105,291	1,227,365	210,218	1,582,810
1999년	26,656	89	76,128	40,559	2,217	24,194	945,459	207,249	1,219,681
2000년	3,665	49	53,092	11,378	8,098	6,435	530,451	89,086	645,451
2001년	4,165	82	20,012	10,813	998	10,361	382,598	851,396	1,256,167
2002년	71,204	270	61,579	115,790	4,780	436,873	4,920,925	636,922	6,115,292
2003년	63,133	148	51,411	96,389	32,388	116,938	3,098,573	1,063,952	4,408,240
2004년	30,446	14	56,903	8,012	473	20,637	516,828	684,484	1,230,435
2005년	9,914	52	26,782	15,027	971	28,029	446,229	559,581	1,049,839
<b>합계</b>	<b>264,473</b>	<b>1,203</b>	<b>531,277</b>	<b>353,436</b>	<b>54,891</b>	<b>813,957</b>	<b>12,549,256</b>	<b>4,410,341</b>	<b>18,181,884</b>

※ 자료 : 소방방재청



### 시도별 자연재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서울	36	461	51,395	10,509	877	58,368	7,511	1,890	419	101	131,571
부산	548	4,126	1,781	8,731	4,725	8	18,415	322,668	1,580	18,190	380,777
대구			8,783	2,715	542		4,305	71,750	1,710	6	89,814
인천	2,196	4,930	27,409	10,978	14,368	32,162	2,917	425	180	89	95,659
광주	326	2,566	949	11,58	879	475	5,692	944	9,832	30,802	64,051
대전	368	11,333	9,098	1,830	443	5,415	713	4,626	68,150	40	102,021
울산	20	844	5,513	154	863		13,797	104,592	1,899	32,217	159,903
경기	164,013	5,992	461,123	384,616	193,986	480,227	85,806	10,085	9,041	8,773	1,803,668
강원	269,486	7,313	72,472	282,661	21,329	228,831	2,749,501	806,656	97,537	23,100	4,558,892
충북	2,155	39,812	144,125	16,698	16,727	69,448	259,419	53,114	324,587	9,176	935,265
충남	14,489	28,888	91,361	80,380	48,532	222,776	75,834	39,131	365,062	37,095	1,003,552
전북	23,178	12,607	21,526	29,548	29,454	18,250	320,640	44,773	27,252	506,664	1,033,897
전남	3,587	28,937	80,715	126,513	110,710	6,629	440,451	278,482	128,603	249,160	1,453,791
경북	1,922	15,561	467,269	115,016	74,105	110,996	937,017	709,776	150,844	82,147	2,664,658
경남	358	21,768	138,143	108,373	113,309	21,297	1,132,869	1,911,116	34,352	47,737	3,529,327
제주	361	5,768	1,139	29,371	14,584	1,280	60,395	48,205	9,380	4,534	175,032
<b>합계</b>	<b>483,050</b>	<b>190,914</b>	<b>1,582,810</b>	<b>1,219,681</b>	<b>645,451</b>	<b>1,256,167</b>	<b>6,115,292</b>	<b>4,408,240</b>	<b>1,230,435</b>	<b>1,049,839</b>	<b>18,181,884</b>

※ 자료 : 소방방재청

### 시도별·대상별 자연재해 규모

(1996~2005년)

구분	이재민 (인)	사망 (인)	침수면적 (정보)	건물 (백만원)	선박 (백만원)	농경지 (백만원)	공공시설 (백만원)	기타 (백만원)	합계 (백만원)
서울	4,879	63	272	10,314		68	77,226	43,960	131,571
부산	11,951	31	5,701	11,591	8,528	100	192,885	167,671	380,777
대구	1,718	13	2,150	943	5	484	82,516	5,865	89,814
인천	5,294	40	9,546	4,873	1,564	3,560	50,494	35,166	95,659
광주	3,265	9	1,317	2,401		350	14,924	46,375	64,051
대전	481	1	304	846		900	28,849	71,424	102,021
울산	3,804	13	594	2,394	549	189	65,989	90,780	159,903
경기	41,199	250	83,059	61,258	1,169	65,934	1,054,994	620,311	1,803,668
강원	51,805	208	22,234	98,016	592	393,764	3,777,529	288,989	4,558,892
충북	15,761	28	16,450	6,179	40	32,714	607,498	288,831	935,265
충남	22,951	22	76,744	8,700	989	29,445	305,245	659,171	1,003,552
전북	5,502	57	80,903	10,492	2,660	46,571	651,139	323,033	1,033,897
전남	20,803	101	84,087	43,121	10,672	9,816	819,535	570,645	1,453,791
경북	25,788	155	55,971	24,033	1,151	170,123	2,191,856	277,493	2,664,658
경남	48,189	176	78,942	64,138	23,729	52,701	2,518,953	869,804	3,529,327
제주	1,083	36	13,002	4,132	3,238	7,229	109,616	50,814	175,032
<b>합계</b>	<b>264,473</b>	<b>1,203</b>	<b>531,277</b>	<b>353,436</b>	<b>54,891</b>	<b>813,957</b>	<b>12,549,256</b>	<b>4,410,341</b>	<b>18,181,88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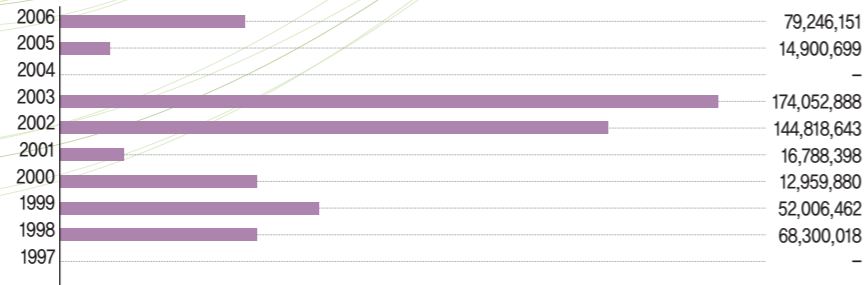
※ 자료 : 소방방재청

## 의연금 모금·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창립 이후 줄곧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의연금과 의연품을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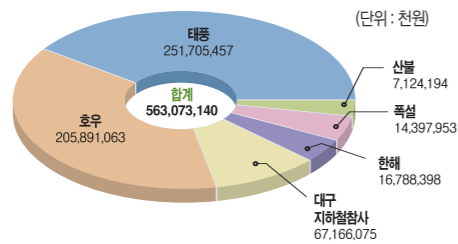
### 10년간 모금 현황(1997~2006년)

• 총 모금액 : 563,073,140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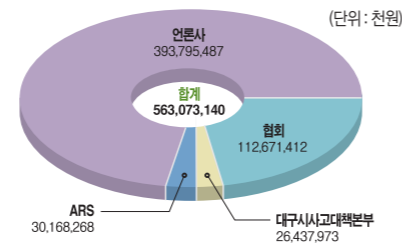


※ 1997년과 2004년에는 모금을 하지 않았음.

### 10년간 재해별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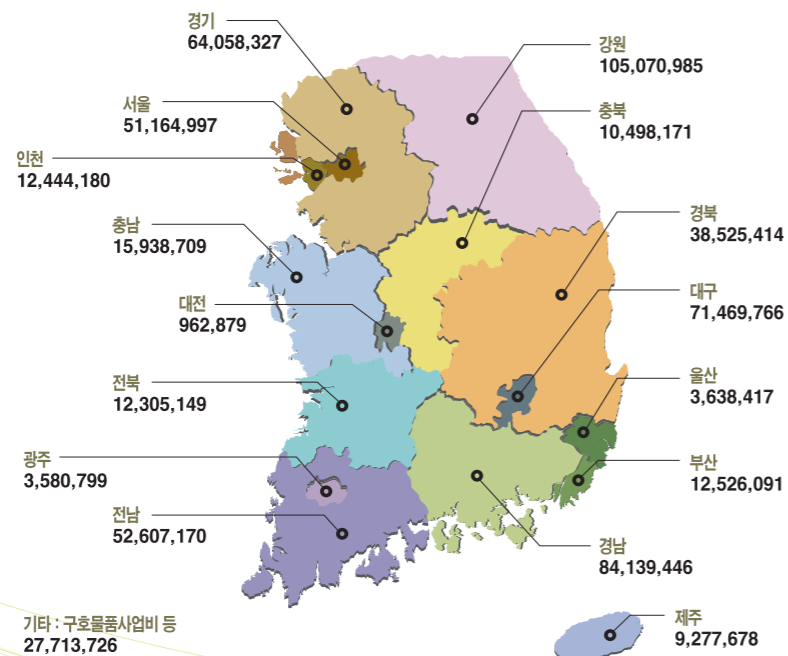


### 10년간 모집처별 모금



### 10년간 시도별 지원

• 총 지원액 : 575,921,904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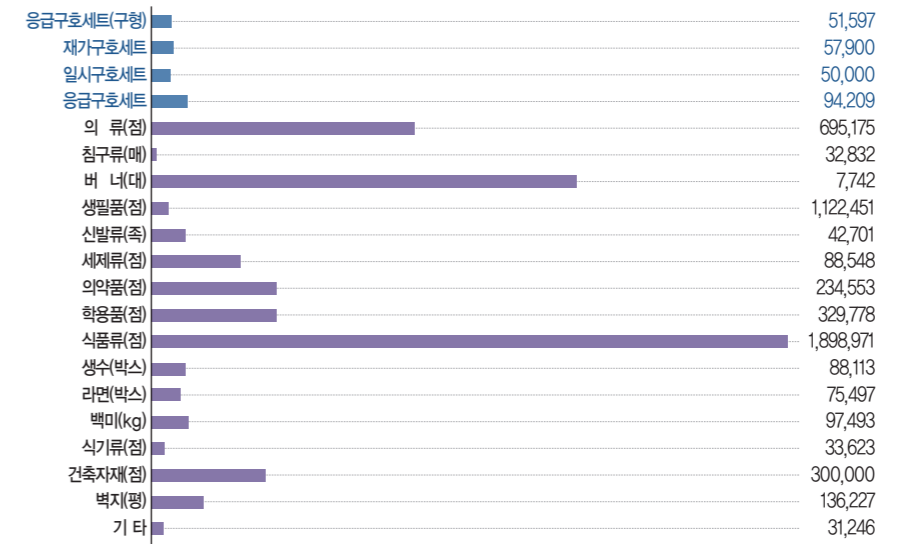


## 의연품 모집·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각종 구호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 6년간 품목별 모집(2001~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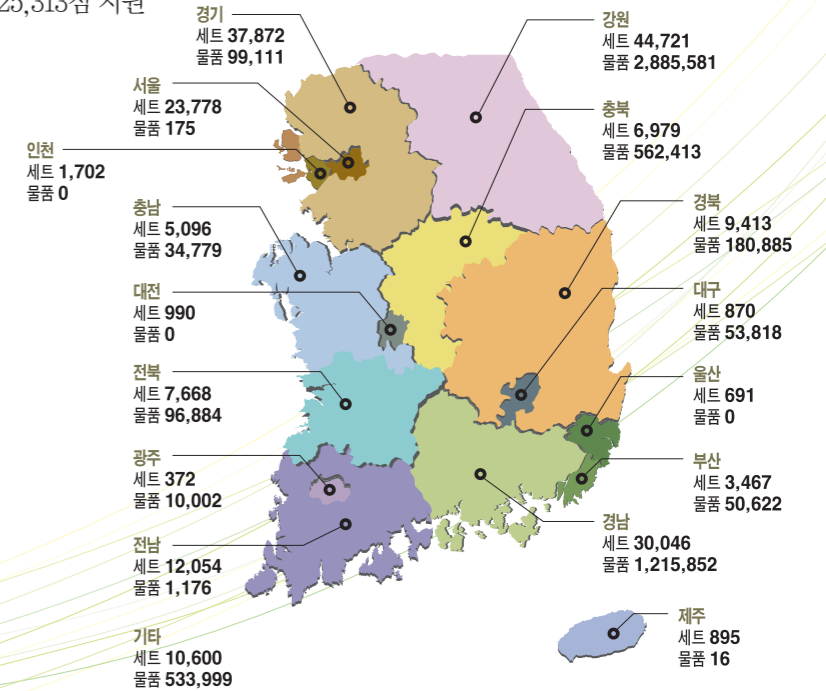
• 구호세트 : 253,706세트 제작  
• 의연품 : 5,214,950점 모집



※ 기타에는 가구류, 양수기 등이 포함됨.

### 6년간 시도별 지원(2001~2006년)

• 구호세트 : 197,214세트 지원  
• 의연품 : 5,725,313점 지원



2007년

# 구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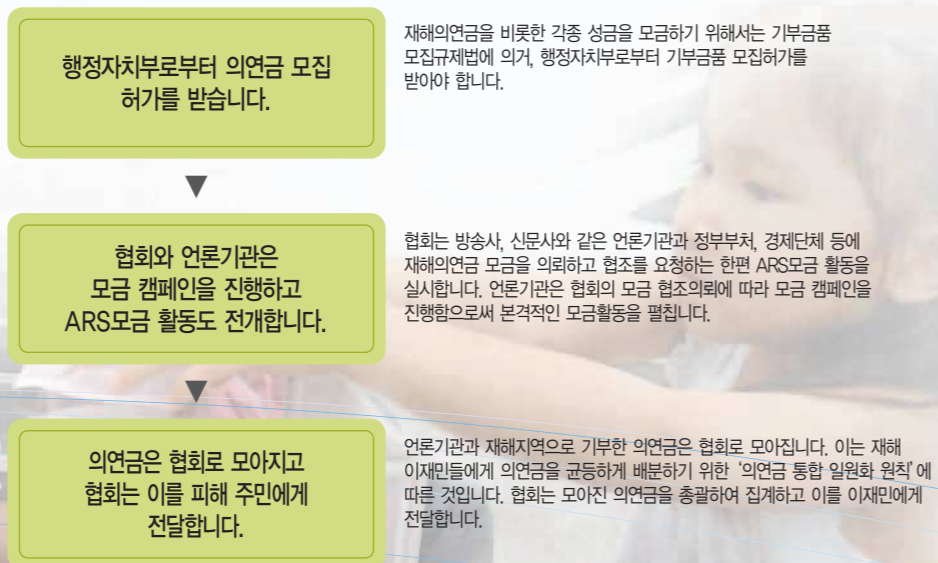
## 2007년도 재해의연금 모금

### 의연금품은 이렇게 모집합니다

-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7년 9월 30일 이후 재해구호법)에 의거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여 피해 주민에게 지원합니다.
- 목표 모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모금활동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 언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펼칠 예정입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 의연금품 모집허가 및 상황총괄, 기획모금 및 의연금품 접수, 의연금품 모집안내, 콜센터 운영  
 전국 언론기관 : 모집안내 및 언론사별 의연금품 접수  
 지방자치단체 : 의연금품 기탁 의뢰 시 접수 안내 또는 단순접수 후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언론기관에 전달
- 기탁 모금 및 ARS 모금, 인터넷 모금 등을 통해 의연금품을 모집합니다.
- ARS 모금 :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통합 운영 및 언론기관에 홍보 의뢰  
 ※ARS번호 : 060-700-#####(통화당 2,000원)



### 의연금 모금 절차



### 의연금 모집 과정

-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의연금 모금과 더불어 의연금 모집 캠페인도 전개되고 전국 각지에서 온 의연금이 협회와 피해자단체에 전해집니다.
- 협회와 자단체는 이렇게 모인 의연금의 종류, 상태, 수량 등을 파악한 후 전달 장소 및 시기 등을 협의하고 물품 분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 협회는 기부된 의연품을 재해 당해에 피해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며, 일부 구호품의 경우 다음 재해에 대비하여 광역창고에 비축합니다.
- 재고물품, 하자물품, 1회 이상 사용한 중고물품 및 기타 이재민 구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접수 하지 않습니다.

### 의연품을 기탁하실 때 참고사항입니다

- 재해 현장에서는 기본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피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 분	필요한 의연금	불필요한 의연금
의 류	체육복, 속옷, 면티, 면바지	양복, 여성패션의류, 넥타이, 한복, 패션모자
신발류	운동화, 슬리퍼, 장화	운동화(280mm이상, 225mm이하), 구두, 부츠
침구류	춘추이불, 모피, 베개	침대용 침구세트
식품류	백미, 생수, 라면, 음료수, 빵, 즉석밥, 김, 통조림	생고기, 어패류, 일반우유, 냉장·냉동식품
생활용품	각종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버너, 부탄가스, 수건, 칫솔, 치약, 생필품세트, 면도기, 생리용품	장롱, 침대, 소파 등 가구류
식기류	냄비, 후라이팬, 수저세트, 플라스틱용기	
건축자재	벽지, 장판	벽돌, 시멘트, 철근, 보일러
의약품	피부연고제, 감기약, 모기약, 지사제 등 일반의약품	전문약품
기 타	상품권	부동산, 그림

※ 재고물품, 하자물품, 중고물품, 유통기한이 도래한 물품, 기타 이재민 구호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달이 어려운 물품은 기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의연금품 지원

### 의연금은 이렇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앙지원 대상자 중에서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의연금품 관리운영규정의 대상이 되는 이재민에게 지원됩니다.
- 의연금은 공공시설의 복구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재민에 대한 직접 지원금으로만 쓰입니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의연금을 이재민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지급할 때는 통장에 '국민성금' 이 명기됩니다.

#### 지원기준

- 의연금 모금액에 따라 지급한도 내에서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지원합니다.
- 의연금은 균등분배를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집금하며 통일된 지원기준에 따라 이재민에게 지원됩니다.

(근거: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구 분	단 위	지원한도	비 고	
사망자 및 실종자	인	세대주	1000만원 이내	의연금 100%
		세대원	500만원 "	
부상자	인	세대주	500만원 "	
		세대원	250만원 "	
전파주택	세대	500만원 "		
반파주택	세대	250만원 "		
침수주택	세대	100만원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세대	100만원 "		
소상공인	세대	100만원 "		

- 사망자 및 실종자: 사망·실종자의 유족은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부상자: 재해로 인한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
- 전파주택세대: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세대.
- 반파주택세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괴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세대.
- 침수주택세대: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세대.
- 생계지원대상세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 및 소상공인 피해 세대.

### 의연품은 이렇게 지원합니다

- 협회장은 자치단체장의 요청 및 재해 피해 정도와 이재민의 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지원합니다(근거 규정: 시행령 제8조 3항, 시행규칙 제7조 등).
- 의연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지역 '구호물품 접수·배분센터' 등에 전달되며, 이재민에게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재민 구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의연품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등 기부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며, 바자회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이재민에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재해구호 자원봉사

### 피해 이웃의 고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재해로 실의에 찬 이웃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재해구호 자원봉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재해구호 전문 자원봉사자를 더욱 육성하겠습니다

- 재해현장을 이해하고 신속히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지역의 방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해구호 지역리더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재해에 대한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 봉사단·협력기관과 힘을 합해 돕겠습니다

자원봉사자 : 재해구호 자원봉사단

협력 기관 :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특전동지회), 의용소방대, 기업체 사회봉사단, 종교단체 구호봉사단 등

###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자원봉사 커뮤니티(싸이월드 사이좋은세상 및 네이버 해피로그 등)를 운영,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재해관련 정보 등을 교류하며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재해구호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재해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재해발생 시 효과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세탁구호 활동

### 세탁구호 활동이란?

세탁구호 활동은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의 오염된 의류와 이불 등을 이동식 세탁차량을 통해 무료로 세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동식 세탁차량은 18kg 세탁기 5대, 건조기 1대가 장착된 5톤급 특장차로서 재해지역을 순회하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130세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탁구호 활동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파주 및 함양에 위치한 재해구호물류센터에 세탁차량을 1대씩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해기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재해현장에 차량 및 인원 투입
- 이재민 구호활동 전개 및 재해지역별 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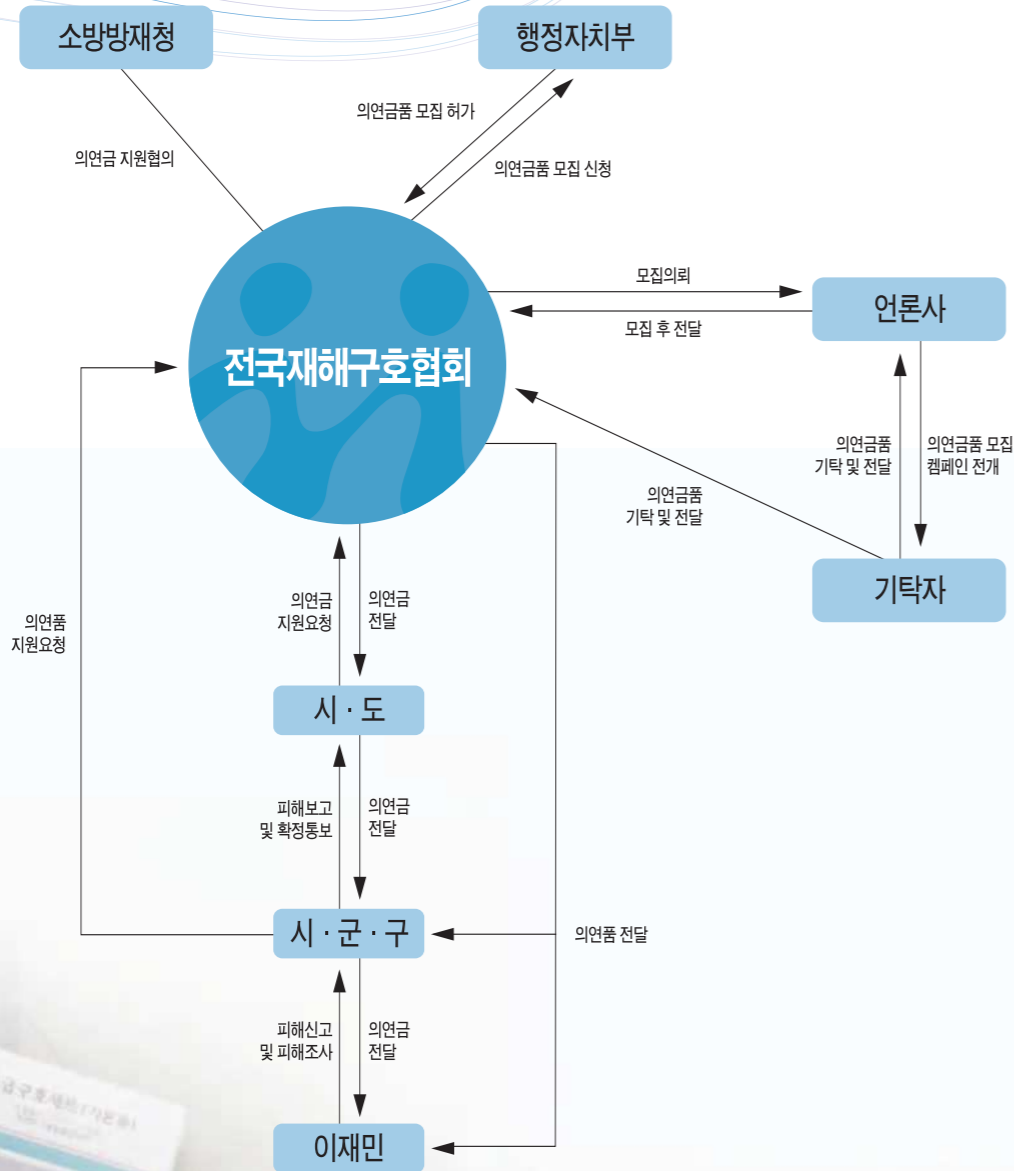
비재해기간 (10월 16일부터 이듬해 5월 14일까지)

- 일반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세탁구호 활동 전개
- 매일 차량 사용에 대한 실적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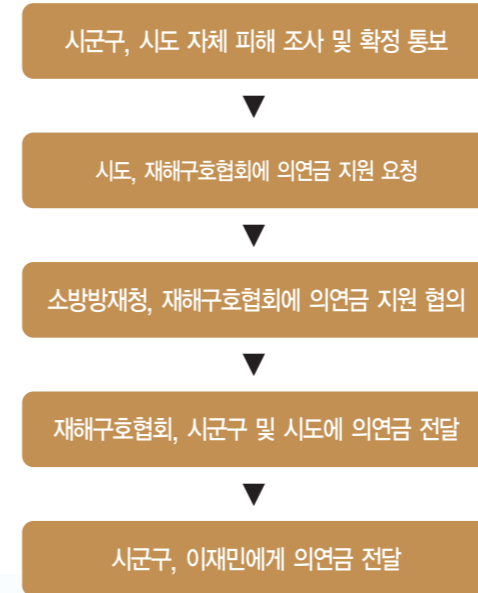


# 2007년 구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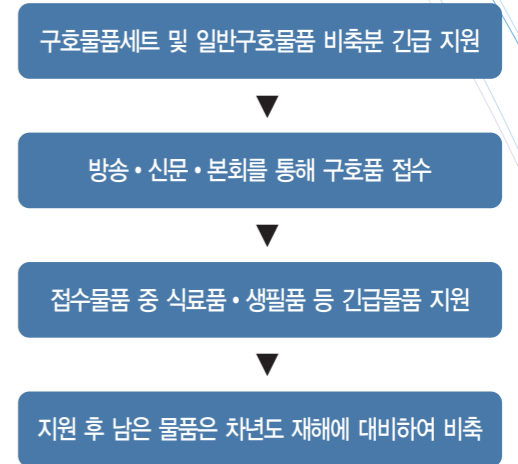
## 의연금품 지원



## 의연금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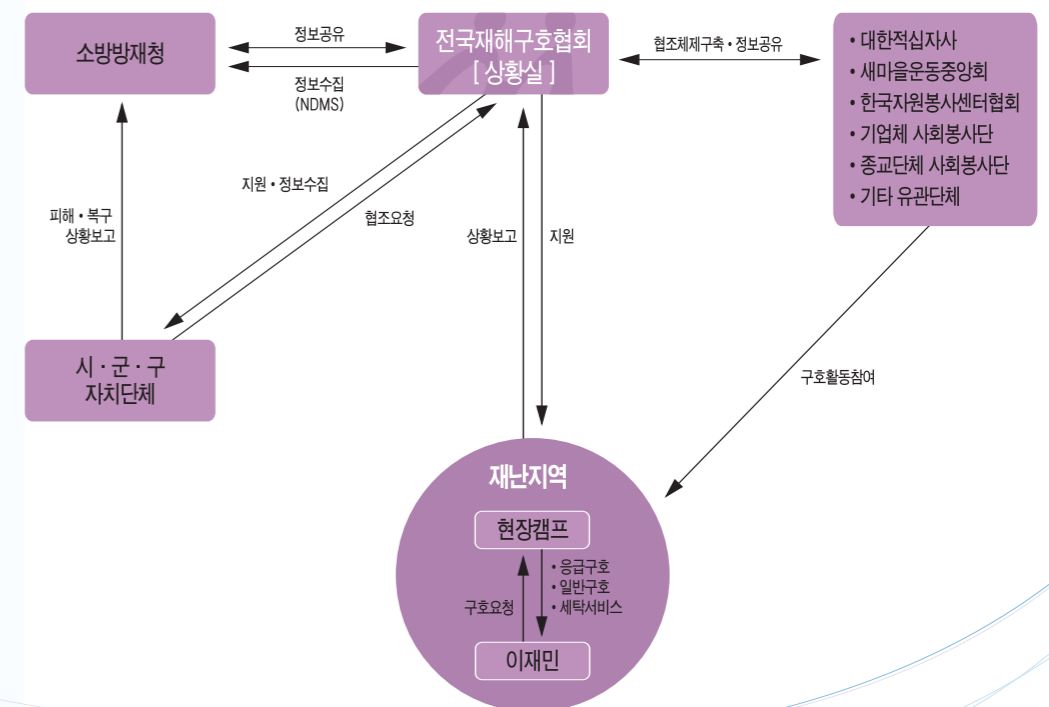


## 의연품 지원절차



※구호세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수행하기 위해 재해 발생 전에 구호물품을 종류별로 세트화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히 지원되는 응급구호품으로서 일사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기구호세트 등 3가지가 있음.  
【부록】 '재해구호물품세트' 참조

## 자원봉사 구호 활동





# 협회 이모저모

## 재해구호법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

효율적인 재해구호와 국민성금 모금 및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해구호법이 2006년 12월 22일 입시국회를 통과하며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구호를 위해 지역구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법 제8조), 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따르던 의연금품 모집활동을 재해구호법에 의해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모집한 의연금은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로 납입하도록 했다. 의연금 배분은 배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배분위원회로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가 지정되었다. 모집비용은 모집액의 100분의 2로 상한선을 두었으며,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상황 및 내역,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록】재해구호법 참조

## 협회 회장 및 이사진 평창군 방문

수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현황 현장 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최학래 회장 및 이사진은 평창군청을 방문해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현황을 보고받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을 살펴보았다. 2006년 12월 5일 전국재해구호협회 최학래 회장을 비롯한 한중광 상임이사, 이웅 한국신문인크(주) 사장, 송두환 법무법인한결 대표이사, 전홍구 KBS총무팀장 등 14명은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재해 구호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학래 회장은 재해 복구에 노력해 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후 “재해구호협회가 전달한 국민성금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이재민을 위로하려는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라며 “성금을 보내준 국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혁승 평창군수는 “재해구호협회가 국민성금을 적기 적소에 지원해 줘 이재민 구호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평창군 진부면 일원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을 방문, 위로하는 한편 김치 37상자와 통조림선물세트 52상자를 전달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최학래 회장(오른쪽에서 5번째) 및 이사진은 평창군 진부면 일원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을 방문, 김치 등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 현대기아차그룹과 공동재난구호활동 협약식 체결

현대차 사회봉사단과 함께 세탁구호 등 이재민 구호활동 전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현대기아차그룹 사회봉사단과 공동재난구호활동 협약식을 체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재해복구 구호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현대기아차그룹 사회봉사단(단장 유홍중)과 2006년 7월 20일 현대기아차그룹 양재동 사옥에서 공동재난구호 협약식을 갖고,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특수차량을 통한 세탁구호 실시 ▲주택복구 ▲구호물품지원 ▲자원봉사활동 전개 등 입체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현대기아차그룹과 함께 5톤 카고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식 세탁구호 차량 2대를 강원도 재해 현장에 긴급 투입, 수해 현장의 이재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세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협회와 사회봉사단은 협회의 재난구호 노하우와 사회봉사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합하여 폭우와 태풍 등 자연 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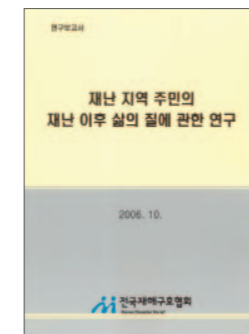


현대기아차그룹 사회봉사단(단장 유홍중, 오른쪽 2번째)과 공동재난구호활동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 연구 보고서 발간

재난지역 주민의 재난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재난지역 주민의 재난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2006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재난 피해자들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규모 재난피해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특히 이번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최근 수년 간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 자원활동가들을 심층 면담함으로써 이들이 재난 이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현재 재난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해 냈다. 이 연구는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재해구호 자원봉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싸이월드(미니홈피) 및 네이버(해피빈) 운영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네티즌들에게 재해구호활동을 홍보하고 각종 구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싸이월드(<http://town.cyworld.com/1365>)'에 '나눔을 실천해요'라는 제목의 미니홈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현재 1천여 명의 1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기부 사이트 "해피빈(<http://happylog.naver.com/1365>)"을 2006년 4월부터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네티즌들이 기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홍보 동영상 제작

### 이재민 구호 등 나눔의 메시지 전달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 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재민 돕기 동참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희망 그리고 나눔의 시작'이라는 이름의 홍보영상물을 DVD로 제작, 총 2천여 장을 배포했다.

#### 제작된 홍보영상물은

- ▲태풍, 폭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현장과 참상을 보여주는 '재난재해 고통의 시작' 편
- ▲재해발생 지역의 이재민 구호 활동 모습을 담은 '긴급구호 활동 현장'
-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국민에 대한 성원이 담긴 '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
- ▲재해현장에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편으로 구성됐으며 8분 분량이다.



이 영상물은 재해구호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한편, 교육 자료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과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배포되었다.

##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자료집 발간

### 2006년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이야기 모음집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06년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 이야기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자원봉사활동 자료집을 2006년 12월 29일 발간하였다. 이 책은 2006년 1년 동안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재해구호자원 봉사활동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점을 '나눔', '희망', '연결'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진과 함께 실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체험과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간에 필요한 교훈들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는지,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등 재해구호 자원봉사자가 갖춰야 할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필독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록

## Contents

협회소개	36
성금과 구호품을 기탁하려면	40
재해구호물품세트	42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참가하려면	44
재해구호법	46



# 협회 소개

## 재해구호협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고자 국민 성금과 구호품을 모아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봉사단체입니다.

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힘을 합해 재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구호하고자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2년 재해구호법 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회는 동포애와 이웃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재민에게 배분하여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나 대지하철사고 같은 대형 인재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국민이 보내준 8천2백억 원 이상의 성금과 3천만여 점 이상의 구호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호실적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미국·일본·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재해구호활동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 걸어온 길

1961. 07. 13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1961. 09. 26	(가칭) 전국재해대책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 조직
1961. 10. 26	전국재해대책위원회 창립총회
1961. 11. 07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1964. 09. 03	사회단체 등록
1964. 10. 31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1967. 05. 30	7월을 '재해구호의 달'로 제정
1968. 10. 15	사단법인으로 개편
1970. 05. 10	'사랑의 열매', 전국기관 및 학교, 기업에 배부
1979. 05. 30	문교부, '사랑의 열매' 모금 시행승인
2001. 12. 19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법정 구호기관이 됨
2002. 12. 10	'전국재해구호협회' 개칭
2006. 12. 22	재해구호법 전부 개정으로 의연금 배분의 총괄기관이 됨

## 협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재해의연금품 모집·배분

- 재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연금품 모집
- 기탁 의연금품 관리 및 배분

### 구호물품 비축·지원

-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를 위한 물류센터 운영 및 구호물품 비축
- 효율적인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물품세트 제작 및 지원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지원

### 재해구호자원봉사 등 재해구호활동

- 협회 소속의 재해구호자원봉사자 모집 및 구호 활동
- 재해구호자원봉사 교육 관련 사업 전개

### 재해구호 연구조사·홍보

- 재해구호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을 통한 선진화된 재해프로그램 개발
- 기탁자 및 수혜자를 포함한 대국민 홍보 활동

## 대표자

### 초대회장



**재임기간**  
1961.7~1961.9  
**주요약력**  
초대법제처장  
(전)고려대학교 총장  
통일원 고문 국정자문위원

유진오

### 2대회장



**재임기간**  
1961.9~1963.4  
**주요약력**  
협회 창립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성천문화재단 이사장

류달영

### 3대회장



**재임기간**  
1963.5~1964.1  
**주요약력**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대회장  
(전)한국신문연구소장

이관구

### 4대회장



**재임기간**  
1964.2~1964.10  
**주요약력**  
초대 외무부 장관  
(전)워싱턴한인협회  
수석위원  
국제연합 한국협회 이사

임병직

### 5대회장



**재임기간**  
1964.10~1976.6  
**주요약력**  
(전)동아일보사 회장  
국제언론인협회(IPJ)  
한국위원장  
전국기자협회장

고재욱

### 6대회장



**재임기간**  
1976.6~1985.3  
**주요약력**  
협회 창립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성천문화재단 이사장

류달영

### 7대회장



**재임기간**  
1985.3~1994.2  
**주요약력**  
(전)조선일보 대표이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류건호

### 8대회장



**재임기간**  
1994.3~1998.4  
**주요약력**  
(전)경향신문사 사장  
ABC협회 회장

최종물

### 9대회장



**재임기간**  
1998.4~2000.3  
**주요약력**  
조선일보사 사장  
국제언론인협회(IPJ)  
한국위원장

방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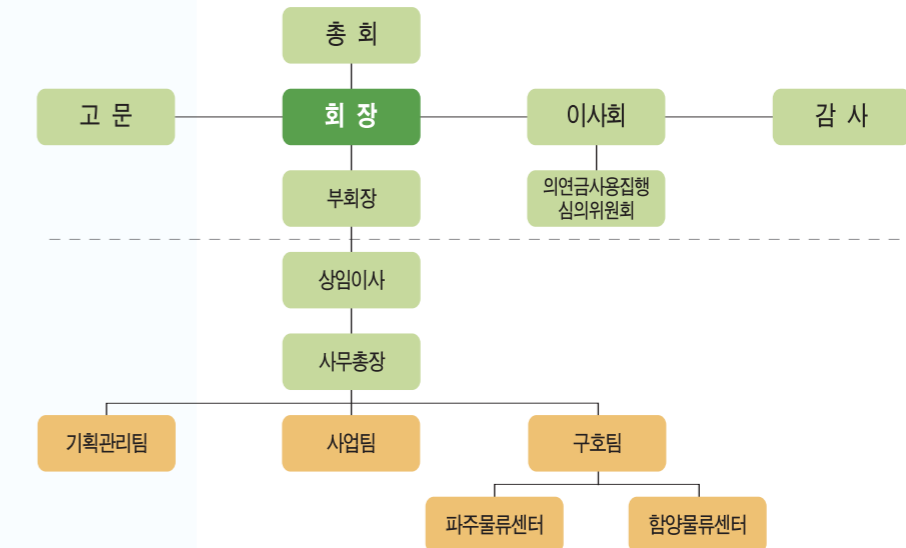
### 10대회장



**재임기간**  
2000.3~현재  
**주요약력**  
(전)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회장

최학래

## 조직



## 임원

직 위	성 명	소속기관
회 장	최학래	전국재해구호협회
부회장	김대성	제주일보사 회장
"	최문순	문화방송사 사장
상임이사	한중광	전국재해구호협회
이 사	송필호	중앙일보사 사장
"	노승숙	국민일보사 회장
"	남선현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	박수만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	안국정	(주)SBS 부회장
"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이 용	한국신문인크(주) 사장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	정연주	KBS한국방송 사장
"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	지 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원장
"	채수연	우리교육발전연구원 원장
"	최문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	표완수	YTN 사장
감 사	서문훈	안세회계법인 대표
"	조흥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회원

직 위	성 명	소속기관
회 원	강대진	전국극장연합회 회장
"	경만호	서울특별시시사회 회장
"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김학준	동아일보사 사장
"	노진환	서울신문사 사장
"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회장
"	배귀섭	대전문화방송 사장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이동한	세계일보사 사장
"	이병규	문화일보사 사장
"	박세홍	대한주택공사 사장
"	이중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장재구	한국일보사 회장
"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	장석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최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 성금과 구호품을 기탁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금과 구호품은 재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 성금 기탁하기

### ARS 이용하기

한 통화당 2000원이 기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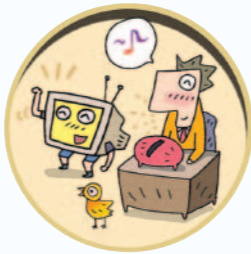
### 은행계좌로 송금하기

계좌이체를 통해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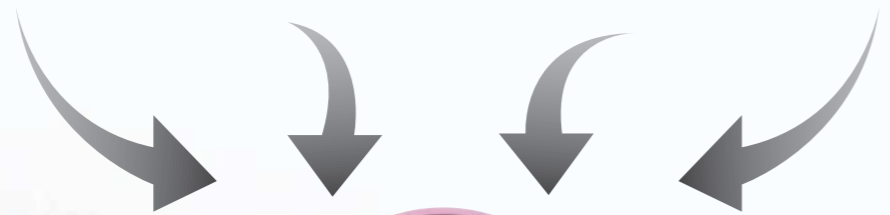
### 직접 방문 기탁

방송사, 신문사, 본회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기탁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등으로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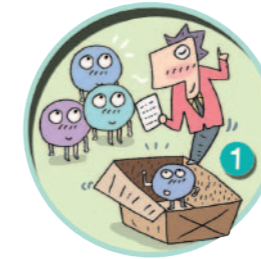


영수증 수령

## 구호품 기탁하기

### 1. 기탁 가능성 확인

기탁 가능한 물품인지를 확인합니다.



### 2. 기탁 물품 파악

기탁 물품의 종류, 상태, 수량을 파악합니다.



### 3. 물품 분류 및 기탁

협회 담당직원과 사전에 협의한 후 물품 분류 및 포장 과정을 거쳐 약속된 장소에 기탁합니다.



### 4. 영수증 수령

기탁에 따른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기탁 관련 영수증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www.relief.or.kr](http://www.relief.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해구호 물품세트



구호물품세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위해 재해 발생 전에 종류별로 세트화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히 지원되는 응급구호물품으로서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등 3가지가 있습니다.

## 일시구호세트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수용시설에 일시대피한 이재민에게 지원됩니다.



품명	규격	수량
치약	20g	1점
칫솔	일회용	1점
세면비누	25g	1점
수건	30X45cm	1매
다목적보온담개	213X132cm	1매
화장지	50매	1점

## 재가구호세트

수용시설에서 귀가하는 이재민에게 지원됩니다.

품명	규격	수량
가스레인지	휴대용	1대
코펠	4인용	1세트
수저	스테인레스스틸	4벌
세탁비누	250g	1점
세탁세제	1kg	1점
주방세제	1kg	1점
고무장갑	고급형	1켤레
수세미	부직포	2매
면장갑	반코팅	1켤레



## 응급구호세트

재해를 입어 수용시설에 대피한 이재민에게 지원됩니다. 기본용과 개인용(남성·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용

품명	규격	수량
이불	210X170cm	1매
모포	200X150cm	1매
칫솔	성인용	2점
치약	170g	1점
세면비누	100g	2점
수건	80X40cm	2점
화장지	50m 이상	2점
빨래줄·집게	PP, 5m, 8개	1세트
베개	PVC, 38X28X10cm 이상	2점
반질고리	실, 골무, 가위, 바늘, 실핀	1세트
손거울·빗	80X60X10mm	1세트
볼펜	0.7mm 유성	1점
메모지	포스트잇, 13X8cm(30매)	1점



### 개인용(남성)

품명	규격	수량
체육복	폴리에스테르	1벌
런닝	면	1점
팬티	면	1점
면도기	일회용	1점
양말	면	1켤레



### 개인용(여성)

품명	규격	수량
체육복	폴리에스테르	1벌
런닝	면	1점
팬티	면	1점
생리대	일반, 슬림	1조
양말	면	1켤레



# 참가하려면

##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는...

태풍·홍수·폭설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해 지역을 복구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 **근로봉사**: 청소, 세탁, 토사제거, 급식,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복구 작업
- **기능봉사**: 집수리, 도배, 차량수리 등
- **상담봉사**: 심리상담, 생활상담
- **의료봉사**: 의료상담, 무료진료, 물리치료, 수지침, 간병 등
- **전문봉사**: 인명구조, 통신·전기·가스 수리, 중장비 지원 등
- **업무지원**: 자원봉사 상담·접수, 자원봉사 모집활동, 자원봉사센터 및 행정기관 업무 보조



## 재해구호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이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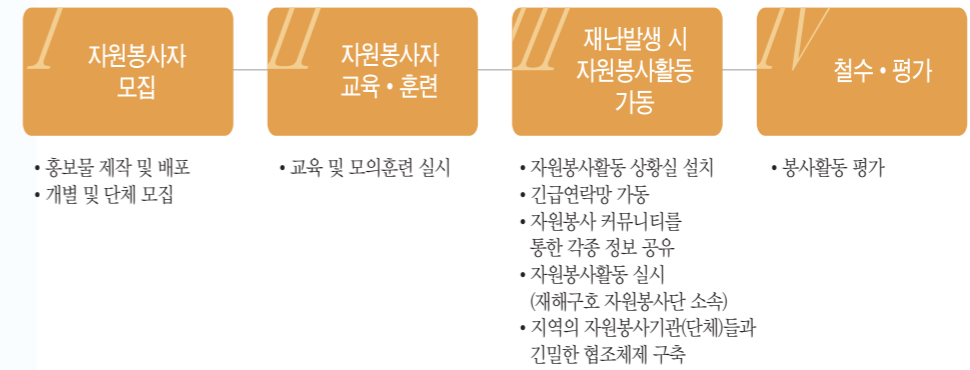
- 재해구호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해 드립니다.
- 자원봉사 활동 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활동에 필요한 구호장비 및 물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이 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전부절 못하게 됩니다. 자꾸 떠나고 싶어집니다.  
 재난지역에 계신 분들이 걱정되어 휴가를 내고, 재난현장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버스에 몸을 맡겨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거기서, 재해현장에서,  
 당신은 천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둡해지는 하늘 아래 삼과 장화를 씻노라면 어느새...  
 당신도, 천사임을 느낄 것입니다.

###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려면?

- 구호팀(전화: 02-3272-0123)에 연락하여 자원봉사 담당자와 사전 상의하시거나
- 협회 홈페이지(www.relief.or.kr) 혹은 자원봉사 커뮤니티인 싸이월드 (<http://town.cyworld.com/1365>)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해구호 자원봉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재난지역 주민을 진심으로 배려한다.
-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 밝고 웃는 얼굴로 활동한다.
- 재난현장에서 얻은 정보(도움이 필요한 집, 도로가 끊긴 곳 등)는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알린다.
- 활동이 끝난 후 자신을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기록한다.



# 재해구호법



## 법률 제8275호

###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

재해구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재 해 구 호 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일시대피자"라 함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를 말한다.
3. "구호기관"이라 함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구호지원기관"이라 함은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대한적십자사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의연금품"이라 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모집자"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모집중사자"라 함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소방방재청장은 매년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달 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달 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①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함에 있어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응급구호실시 및 재해구호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전체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 중인 때이라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①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 ①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 사용 또는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①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소방관서·군부대와 구호지원기관 등 재해구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와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부동산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부동산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생긴 때에는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금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이 명시된 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의연금품의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모집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기간 내에 소방방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⑥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의연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의연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중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모집중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의연금품 출원금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 또는 모집중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집중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연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소방방재청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중사자로 하여금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모집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달리 의연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3. 모집자가 제17조제5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7조제5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7.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8.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의연금품을 기부한 지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금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③모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한다.

- ②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완료시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모집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 ③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금품은 모집자가 모집 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2.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3. 주택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⑦제4항제2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7조(모집비용 총당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당할 수 있다.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 ②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내역,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의연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제31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

2.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공급 및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
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배분위원회의 설치·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협회의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협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급식 제공
2.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공급 및 관리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 업무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금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6.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총당한 자
  7.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모집 상황 및 내역, 배분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에 의연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17조제5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랑 나누기 46년

2006년 한 해도 사랑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창립 이후 줄곧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이재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더욱 든실한 가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